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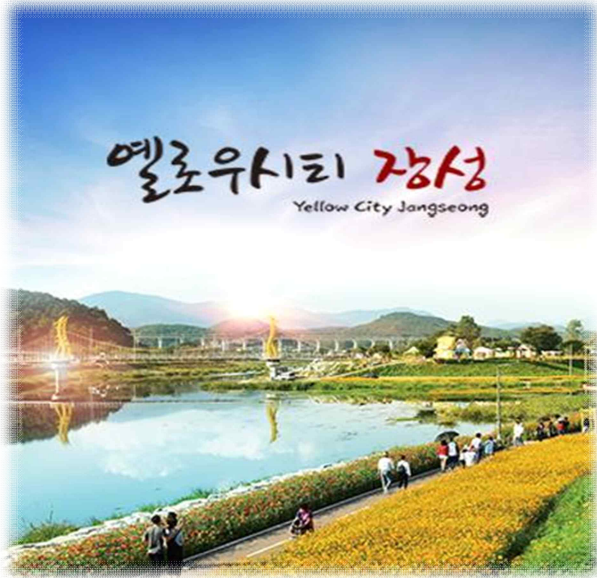
# 백양골 소식

2020년  
10월

■ 제508호 ■

발행인:장성군수/ 편집인:총무과장/ 제작:총무과/ ☎ 390-7239/ FAX 390-7579/ [jangseong.go.kr](http://jangseong.go.kr)/ 2020.10.22.(목)





**[일반행정 소식] ----- 1**

- 1.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!
- 2.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

**[보건·복지 소식] ----- 3**

- 1.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- 2.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연장 안내
- 3.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
- 4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& 영양플러스사업
- 5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6. 임신부·아동 건강관리 지원  
& 임신부 유축기 무료 대여
- 7.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

**[농·축산 소식] ----- 12**

- 1.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안내
- 2.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
- 3. 푸드플랜 신규출하농가 모집 안내
- 4. 고품질 양파 재배관리 요령
- 5. 동물 학대·방치행위 금지 및 사육 관리 철저
- 6. 잠깐! 동물등록 하셨나요?
- 7.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
- 8.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

**[국·도정 소식] ----- 20**

- 1.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
- 2. 의약품 부작용, 피해구제 신청하세요



##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!

### □ 지원대상

○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중

- ① 일반업종 :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
- ② 특별피해업종 :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
  - 집합금지업종 : (전 국) 유흥주점, 뷔페, 대형학원, 노래연습장, 실내집단운동, PC방 등 (수도권) 학원(10인이상), 독서실, 실내체육시설 등
  - 영업제한업종 : (수도권)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점

|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      | 소상공인여부 | 매출액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출액감소 | 지원금액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-------|-------|
| 특별피해업종                     | 집합금지업종 | ○      | 업종별 소상공인<br>매출기준 이하<br>예)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| 무관    | 200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제한업종 | ○      |  | 무관    | 150만원 |
| 일반업종<br>(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) |        | ○      | 연4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| 100만원 |

### □ 신청방법

| 구 분   | 온라인신청  | 방문신청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 간   | 10. 16.(금) ~ 11. 6.(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. 26.(월) ~ 11. 6.(금) |
| 신 청 처 | 새희망자금 사이트(새희망자금.kr)<br>※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                   | 읍면 행정복지센터              |
| 신청서류  | 사업자등록증, 매출감소서류,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문 의 처 | · 새희망자금 콜센터(1899-1082)<br>· 온라인상담 (새희망자금 사이트내 '24시간 채팅상담'이용) |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

문의처 ☎ 390-7252 (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)

##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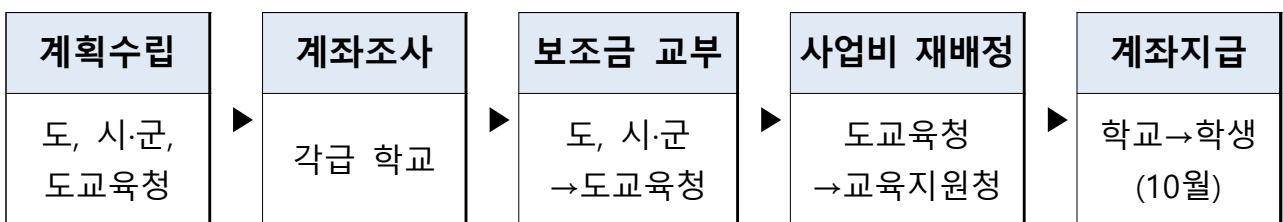
### □ 추진배경

- 코로나-19로 인한 개학지연, 비대면 수업 장기화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
- 정부 아동양육 지원\*에서 제외된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
- \* (초등학생) 아동돌봄 200천원, (중학생) 비대면 학습지원 150천원

### 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2020. 9. 24. 기준, 도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
※ 우리군 지원대상 : 4개 학교 / 1,062명
- 지원금액 : 1인당 150천원
- 지급방법 : 별도 신청없이 학교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
- 재원분담 : 도 25%, 시·군 25%, 도교육청 50%  
※ 우리군 분담액 : 금39,825천원
- 지급시기 : 2020. 10월한

### □ 추진절차



문의처 ☎ 390-8573 (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팀)

##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만 2세(0~24개월) 미만 영아가 있는 다자녀(2인 이상) 가정에  
기저귀·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.

### □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#### ○ 지원대상

- 기저귀
 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영아
  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 가구의 영아
  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의 영아
- 조제분유(기저귀 지원대상 중)
  - 산모가 사망·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  -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보호·한부모 등

【2020년 기준중위소득 80% 판정기준】

(단위:원)

| 가구원수 | 소득기준<br>(80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| 직장가입자       | 지역가입자   | 혼합      |
| 2인   | 2,394,000     | 79,924      | 45,003  | 80,076  |
| 3인   | 3,096,000     | 104,090     | 95,023  | 105,268 |
| 4인   | 3,799,000     | 126,909     | 118,159 | 128,407 |
| 5인   | 4,502,000     | 151,927     | 150,605 | 153,994 |

- 지원내용 : 기저귀) 월 64,000원, 조제분유) 월 86,000원
- 신청기간 : 영아 출생 후(출생신고) ~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
- 구비서류
 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자격 보유 증명 서류 1부
  - 가족관계증명서(등본 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) 1부
  - 조제분유 지원 대상 증빙 서류 1부
- 신청접수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연장 안내

## □ 계도기간 30일 연장

- 행정명령 : 마스크 착용 의무화
- 근 거 :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, 2의2, 2의3, 2의4
- 대 상 :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 기 간 : '20. 8. 21.(금) ~ 별도해제 시
- 계도기간
  - (1차) 8. 21. ~ 9. 30. (2차 연장) 10. 1. ~ 10. 12. **(3차 연장) 10. 13. ~ 11. 12.**

## ○ 착용 시설·장소·대상

- ① (다중이용시설 등 :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)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(방역수칙 의무화)시설의 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 ※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시설 조정
- ② (대중교통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·이용자
- ③ (집회·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
- ④ (의료기관) 의료기관의 종사자·이용자
- ⑤ 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- ⑥ 착용 시설·장소 이외의 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[별표]

## ○ 지도 및 단속

- (마스크 착용 위반) ① 착용 지도 → 불이행시 → ② 과태료 부과
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

## ○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예방법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
### ※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- (예 외 자)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- (예 외 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

## ○ 손해배상 :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의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

문의처 ☎ 390-8309 (보건소 감염병대응팀)

## 별표 마스크 착용 권고

### ○ (실내) 마스크 상시 착용

\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

### ○ (실외) ①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(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),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

### ○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- 집·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,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

※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, 기저질환자,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,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

-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

-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

■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
■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안에서 있을 때

■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
■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■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하며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) 및 사진 촬영(촬영 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
■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
■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#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

2020.10.08. 질병관리청

**진드기 매개 감염병**

## 쯔쯔가무시증

**쯔쯔가무시증**

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 
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,  
전신적 혈관염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

**증상**



두통, 발열, 오한, 구토,  
발진, 근육통, 기침, 가피\* 등

**감염경로**



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 
털진드기 유충이  
사람을 물어 감염

**잠복기** | 1~3주

\*이미지 출처: 질병관리청 2020 진드기설치류매개감염병관리지침 (시원환·조선(대외교 병원))

2020.10.08. 질병관리청


**진드기 매개 감염병**

##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

**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(SFTS)**
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의한  
중증열성 바이러스성 질환

**증상**



고열(38~40°C), 오심, 구토, 설사,  
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, 혈뇨, 혈변, 결막충혈 등

**감염경로**



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 
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  
(드물지만 SFTS 중증환자의 혈액 및 체액으로 전파 가능)

**잠복기** | 4~15일

문의처 ☎ 390-8310 (보건소 감염병대응팀)



#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

2020.10.08. 질병관리청

**진드기 매개 감염병**

## 진드기 제거법

**내원이 어려운 경우**



**가까운  
의료기관 방문**



**손으로  
떼어내지 않기**



**핀셋으로 조심스럽게  
천천히 제거하기**



**해당 부위  
소독하기**

 **주의!** 진드기를 억지로 제거시 진드기 일부가 피부에 남아 2차 세균감염 발생 가능

2020.10.08. 질병관리청

**진드기 매개 감염병**

## 예방수칙



### 야외활동 전

- ☑ 안전하게 옷 갖춰 입기  
(긴 팔, 긴 바지, 모자, 목수건, 장갑 등)
- ☑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



### 야외활동 중

- ☑ 휴식 시 돛자리 사용하기
- ☑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
- ☑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, 풀숲에 앉지 않기



### 야외활동 후

- ☑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고 샤워하기
- ☑ 벌레 물린 상처(검은 딱지 등) 또는 진드기가 물고 있는지 확인하기
- ☑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

문의처 ☎ 390-8310 (보건소 감염병대응팀)

##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### 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
- 기 간 : 2020. 1. 2. ~ 2020. 12. 31.
- 대 상 : 관내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지원내용 : 인공수정, 체외수정(신선, 동결배아) 시술비 일부·전액본인부담금의 90%

| 구 분  |        | 지 원 상 한 액 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     |        | 만 44세 이하  | 만 45세 이상 |         |
| 체외수정 | 신선배아   | 1 ~ 4회    | 최대 110만원 | 최대 90만원 |
|      |        | 5 ~ 7회    | 최대 90만원  |         |
|      | 동결배아   | 1 ~ 3회    | 최대 50만원  | 최대 40만원 |
|      |        | 4 ~ 5회    | 최대 40만원  |         |
| 인공수정 | 1 ~ 3회 | 최대 30만원   | 최대 20만원  |         |
|      | 4 ~ 5회 | 최대 20만원   |          |         |

※ 인공수정 : 정자를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

※ 체외수정 :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여 시험관에서 수정 시킨 후, 자궁에 이식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영양플러스사업 안내

### □ 저소득층 임산부·영유아 대상 보충식품 지원

- 대 상 : 임산부, 출산·수유부, 영유아(생후 72개월 미만)
  - 기 준 :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
  - 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
- 내 용 : 매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
  - 기 간 : 2020. 1. ~ 2020. 12. 31.
  - 배 송 : 월 1 ~ 2회 각 대상가정에 직접 배송
  - 식 품 : 식품패키지에 따라 분유, 쌀, 감자, 달걀, 우유 등
- 신청접수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
문의처 ☎ 390-832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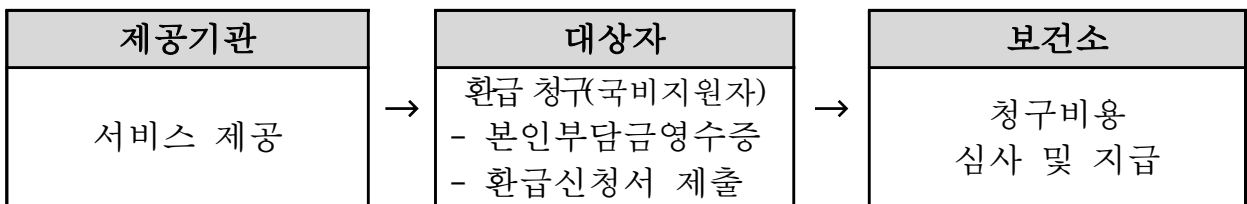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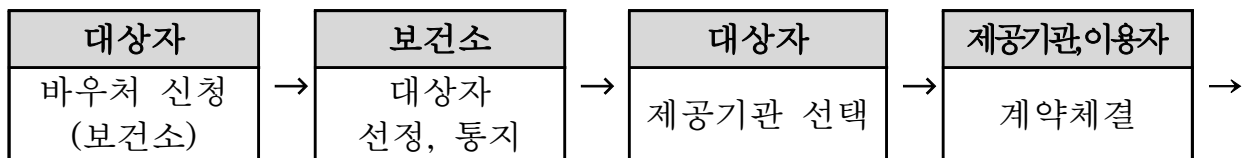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립니다.

- 대 상 : 관내 출산 가정
-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, 가사 지원 등
- 신청기간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~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지원범위

| 태아유형 | 출산순위 | 소득유형<br>(기준중위소득) | 표준형      |          | 비 고 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정부지원금    | 본인부담금    |      |
| 단태아  | 첫째아  | 50%이하            | 870,000원 | 290,000원 | 국비지원 |
|      |      | 120%이하           | 766,000원 | 394,000원 |      |
|      |      | 140%이하           | 609,000원 | 551,000원 |      |
|      |      | 국비지원 제외자         | 609,000원 | 551,000원 | 군비지원 |

※ 태아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유형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

### ○ 지원절차



※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 시 중복지원 불가

### ○ 접수서류

- 공통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
- 추가 : 가족관계증명서(주소 상이한 경우), 휴직증명서(휴직 기간, 유무급 표시)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임산부·아동 건강관리 지원

### □ 임산부

- 대 상 : 보건소·보건지소 임부 등록자
- 내 용
  - 엽산제 : 임신일로부터 ~ 임신 12주까지(1인당 최대 2개월분)
  - 철분제 : 임신16주 이상 ~ 분만전까지(1인당 최대 5개월분)
  - 유산균 : 임신16주 이상(1인당 1개월분)
  - 임부 튜살 크림 : 1인당 1회 지원
- ※ 타기관 중복 지원 제외
- ‘임산부 배려’ 엠블럼 제공
- 지 참 물 : 신분증, 산모수첩
- 접수장소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및 보건지소

### □ 영·유아

- 대 상 : 24개월 이상 ~ 만6세 미만 영·유아
- 내 용 : 어린이 영양제 1인당 연간 1회 지원
- 접수장소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및 보건지소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임산부 유축기 무료 대여

- 대 상 : 관내 등록 임산부
- 기 간 : 4주 대여(3주 연장 가능)
- 지 참 물 : 신분증, 출생증명서
- 접수장소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

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고위험 임신부 입원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.

### □ 지원대상

- 고위험 임신질환\*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

#### \* 고위험 임신질환

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 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 내 성장 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
### □ 지원내용

-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(상급병실입원료, 환자특식 제외)에 해당하는 금액의 90% 지원(10%는 개인 부담 적용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% 지원

### □ 신청기간

-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
### □ 구비서류

- 공통 : 신청인 신분증,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의사진단서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, 입·퇴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(지원대상자 명의)
- 추가 : 가족관계증명서(주소 상이한 경우), 휴직 증명서(휴직기간, 유·무급 표시, 유급시 급여명세서 추가)
-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 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열람·제출

### □ 신청접수

-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안내

### □ 농작물 재해보험이란?

- 최근 이상기후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농작물 재해보험
-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85%를 지원하여 농가는 15%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

### □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?

- 가입기관 : 지역농·축협 또는 품목농협
- 지원품목 : 67품목(당초 62개 → 변경 67개/신규-팥, 시금치, 살구, 보리, 호두)
- 가입자격 :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
- 지원내용 :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(보조 85%, 자부담 15%)

### □ 품목별 가입시기

- 주요작물 가입일정

| 구 분          | 가입기간   |
|--------------|--|
|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| 2020. 2. 24. ~ 11. 27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| 2020. 2. 24. ~ 11. 27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 늘          | (난지형) 2020. 10. 5. ~ 10. 30.<br>(한지형) 2020. 10. 5. ~ 11. 27. |
| 인 삼          | 2020. 10. 5. ~ 11. 27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양 파          | 2020. 10. 26. ~ 11. 27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문의처 ☎ 390-8428 (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)

##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(일반벼&친환경벼) 매입 추진

### □ 매입개요

- 추진기간 : 2020. 10. 5. ~ 12. 31.
- 매입품종 : 2020년산 2품종(새일미, 신동진) / 친환경벼(신동진)
- 매입장소 : 장성군농협통합RPC / 정부양곡 보관창고
- 매입방법 : 톤백(800kg) 또는 포대벼(40kg)로 매입
- 매입가격 : 중간정산금(3만원)은 수매 직후 지급(최종정산 12월까지 지급)
- 매입물량 : 5,141톤(일반벼, 친환경벼, 타작물재배 물량 포함)

| 구 분 | 매입기간          | 매입장소       | 매입계획량 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계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| 5,141톤 |     |
| 산물벼 | 10. 5.~11.20. | 장성군농협통합RPC | 1,300톤 | -   |
| 건조벼 | 11.10.~12.31. | 정부양곡 보관창고  | 3,841톤 | -   |

### □ 전년과 달라진 점

- 친환경 벼 출하농가 증빙서류 읍·면 제출 : 2종
  - 친환경농산물 인증서, 친환경 벼 출하자 확인서(읍·면 서식 구비)
-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장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
  -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자(37.5℃) 매입검사장 출입금지
  - 마을별 시차제 출하를 통해 매입 현장 밀집도 최소화
  - 매입검사장 내 등급판정 현장을 단체로 참관하는 행위 금지
- ※ 등급판정 입회는 마을대표(이장) 등 이 대리 참석

#### < 출하농가 유의사항 >

- ※ 품종검정제 시행에 따라 **매입대상 품종(새일미, 신동진)**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**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(패널티 적용)**
- ☞ 출하농가 매입대상 품종 확인 후 출하 및 다른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

문의처 ☎ 390-8445 (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)

## 푸드플랜 신규출하농가 모집 안내

### □ 푸드플랜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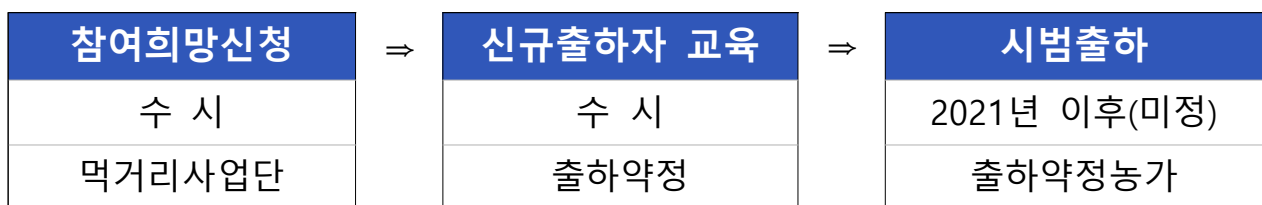
-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, 소비, 유통 등의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체계로 통합관리하여 농업인은 안정적 소득을 보장받고 주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먹거리 통합관리 정책

### □ 신규 출하농가 모집

- 향후 로컬푸드직매장, 공공급식(학교급식, 군부대급식, 복지급식), 장터 등에 참여하여 지역 농산물(가공품 포함)를 출하할 농가 모집
- 참여 희망농가는 신규출하자 교육을 이수하고 출하약정을 통해 참여가능

### □ 참여방법

- 기 간 : 연중 수시
- 대 상 : 관내 농업인
- 신 청 처 : 장성먹거리사업단(395-7802~5) ※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2층
- 농가 참여절차



※ 상기내용 및 일정은 계획 중인 사항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 ☎ 390-8452 (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팀)



## 고품질 양파 재배관리 요령

### □ 육묘 관리

- 잘록병 방제 : 모판 만든 후 몬세렌(수), 지오람(수) 1,000배액 살포
- 충해 방제 : 더웬, 더스반, 카운타(담배나방, 파밤나방) 등 오후 늦게 살포

### □ 비료주기

〈가을 재배에서의 표준 시비량(kg/10a)〉

| 비료종류     | 전체량        | 밑거름량      | 웃거름량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1회        | 2회        |
| 질소(요소)   | 24.0(52.2) | 8.0(17.4) | 8.0(17.4) | 8.0(17.4) |
| 인산(용성인비) | 7.7(45.3)  | 7.7(45.3) | -         | -         |
| 칼리(황산가리) | 15.4(34.2) | 5.8(12.9) | 4.8(10.7) | 4.8(10.7) |
| 석회       | 200        | 200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퇴구비      | 2,000      | 2,000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거름 주는 시기 |            | 아주심기 전    | 2월 중순     | 3월 중.하순   |

### □ 아주심기

- 평균기온 15℃(평균기온 4℃로 내려가기 25~30일 전)가 되는 시기
  - 활착기간 25~30일 정도, 어린뿌리 생장 가능 최저온도 4℃ : 만생종(10월 하~11월 중)
  - 너무 빠르면 추대되기 쉽고, 늦으면 동해나 건조 피해 발생
  - 육묘 일수 : 파종기 빠를 때 45~55일, 늦을 때 35~45일, 기계정식 55~65일
  - 줄기 굵기 6~7.5mm, 키 25~30cm(기계정식 15~18cm), 잎수 4매 정도
- 심는 거리와 방법
  - 아주심기 전날에 못자리에 물을 충분히 주고, 뿌리가 마르고 잘리지 않도록 주의
  - 120cm 이랑에 6줄, 포기사이 10cm를 표준(33,000부/10a)으로 함
    - 심는 간격 : 15~20cm(줄 사이)×10~15cm(포기 사이)

문의처 ☎ 390-8431 (원예소득과 채소팀)

## 동물 학대·방치행위 금지 및 사육 관리 철저

### □ 동물 학대·방치행위 금지 및 사육 관리 철저

-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환경 제공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,
- 우리군 관내에서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.
- 동물에게 해로운 잔반을 먹이거나 오염된 물을 제공하여 건강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하는 형태의 부적절한 영양공급이나,
- 발이 빠지는 뜰장, 좁은 공간에서 과밀 사육 등 적절치 않은 사육 환경에서 키우는 형태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.
-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,
- 위의 사항을 위반 시 동물보호법 및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### □ 동물 사육·관리에 관한 규정

-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·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
-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,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,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조치 명령 위반 시  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문의처 ☎ 390-8425 (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)

## 잠깐! 동물등록 하셨나요?

### □ 등록대상

#### ○ 동물등록 대상과 하는 시기는?

-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
- 강아지가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.

#### ○ 변경신고란?

-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(10일 이내)
- 소유자 정보(주소, 전화번호)가 변경되었을 때,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,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,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(30일 이내)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### □ 등록방법

#### ○ 동물등록은 어떻게?

- 우리군 등록대행기관에 접수하세요!
  - 장성동물병원 : 장성읍 영천로 83 (☎ 061-394-7753)
  - 옐로우동물병원 : 삼계면 사창로 57 (☎ 010-5415-9114)

#### ○ 변경신고는 어떻게?

- 소유자변경은
  -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
- 소유자정보 변경사항, 동물 유실·사망 등은
  -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동물보호관리 시스템([animal.go.kr](http://animal.go.kr))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문의처 ☎ 390-8425 (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)

##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

### □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

-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악취 저감 및 고품질 퇴비화로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
- 시행일시 : 2020. 3. 25부터
- 대 상 : 축사면적(배출시설)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 
(소 100㎡, 돼지 50㎡, 가금 200㎡ 이상)
- 시행내용
  -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(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)

| 항 목 | 축 종  | 기 준       | 부 숙 도     | 비고 |
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부숙도 | 모든가축 | 1,500㎡ 미만 | 부숙중기      |    |
|     |      | 1,500㎡ 이상 | 부숙후기·부숙완료 |    |

-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(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)

| 항 목  | 신고규모  | 허가규모   | 비고 |
|------|---|--|----|
| 검사횟수 | 연 1회  | 6개월에 1회  |    |
| 시설규모 | •한우·젓소 100~900㎡ 미만<br>•양돈 50~1,000㎡ 미만<br>•가금 200~3,000㎡ 미만 | •한우(90두)·젓소(70두) 900㎡ 이상<br>•양돈(1,200두) 1,000㎡ 이상<br>•가금 3,000㎡ 이상 |    |

- 과태료 부과(가축분뇨법 제53조)

| 항 목 |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|      | 퇴·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|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    | 허가               | 신고   | 허가             | 신고    |
| 1차  | 50만원             | 30만원 | 100만원          | 50만원  |
| 2차  | 70만원             | 50만원 | 150만원          | 70만원  |
| 3차  | 100만원            | 70만원 | 200만원          | 100만원 |

문의처 ☎ 390-8421 (농업축산과 축산팀)

##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

- 신청기간 : 2020. 1. 1. ~ 12. 15.
  - 신청장소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메일([js714900@korea.kr](mailto:js714900@korea.kr)) 접수  
※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첨부
  - 신청자격
    -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
    - 단,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 지원대상자는 제외
  - 지원내용
    - 1인 480,000원 친환경 농·축산물, 유기식품 등 (자부담 : 96,000원)
      - 친환경농산물 : 애호박, 마늘, 대파, 토마토, 블루베리, 깻잎 등
      - 친환경축산물 : 유기농달걀 등
      - 친환경유기식품 : 이유식(쌀, 단호박), 유기농 김 등
  - 지원절차
    - 농협몰([www.nonghyupmall.com](http://www.nonghyupmall.com)) 가입
    - 신청서 제출 → 확정 및 자부담 입금계좌 문자 발송
    - 자부담 96,000원 해당계좌 입금 후 농협몰 포인트로 480,000원 입금
- ※ 택배 배송은 주 1회이며, 친환경농산물 특성상 시기별 제품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 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농업축산과 또는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.

문의처 ☎ 390-8413 (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)

2020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 
POPULATION AND HOUSING CENSUS



## | 2020 인구주택총조사 |

나와 내 가족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

# 국민대표로 말해주세요!



인터넷 및 전화 조사 10.15.~31. / 방문 면접 조사 11.1.~18.

이제 간편하게 인터넷 또는 전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!

홈페이지([www.census.go.kr](http://www.census.go.kr)) / 콜센터(080-400-2020)



▶ 조사대상 : 2020년 11월 1일 0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·외국인. ※기본조사는 행정자료로 대체하며 20%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만 응답하는 조사입니다.  
▶ 조사방법 : 인터넷 및 전화 조사(10월 15일~10월 31일), 방문 면접 조사(11월 1일~11월 18일) ※인터넷 및 전화로 응답하지 않으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.

# 의약품 부작용, 피해구제 신청하세요



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, 장애,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·장례비,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

보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.

| 구분      | 산정기준  |
|---------|---|
| 사망일시보상금 |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   |
| 장애일시보상금 |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|
| 장례비     |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 |
| 진료비     |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<br>*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,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 |

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데? 필요한 서류는?

신청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양식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어.

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신청 누리집 (<http://drugSAFE.or.kr>)  
상담 신청 : 1644-6223





장성군